[별표 1]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평가기준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적합성평가로서 타당성평가/검증을 제공하는 기관의 적격성, 일관된 운영 및 공평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본 규격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은 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 기관으로서 타당성 평가/검증을 제공할 수 있다. 기관은 타당성평가만을 수행하거나, 검증만을 수행하거나, 또는 두 활동 모두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본 규격은 모든 부문의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장이 미래에 의도된 사용(타당성평가)과 관련하여 타당하거나 또는 진실하게 기술(검증)었다는 확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적합성 평가 활동(예: 시험, 검사 및 인증)의 결과는 본 규격에 따른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이 되지 않으며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이 다른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내의 한 단계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다. 본 규격은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세스와 절차를 담은 특정 부문별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어떤 부문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본 규격은 인정기관의 인정평가, 동등성평가그룹 내의 동등성평가 또는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정부, 규제당국, 프로그램 소유자, 산업단체, 기업, 고객 또는 소비자가 어떠한 형태의 인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비고 본 규격은 운영 중인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일반 요건을 담고 있다. 적용되는 프로그램 요건은 본 규격 요건에 더해 추가 요건으로 적용된다	**1. 적용범위** ISO/IEC 17029:2019 1항을 따른다. 본 문서는 환경 정보 성명서에 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원칙 및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기관 관련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본 문서의 요구사항과는 별개인 추가 요구사항이다.
2. 인용표준 다음 문서는 본 규격의 본문에 그 일부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인용되어 있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2. 인용표준** ISO 14030-4 환경성과 평가 - 녹색융자도구 — 제4부: 검증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인용표준은 해당 발행본만이 적용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해당 표준의 최신본(모든 수정사항 포함)을 적용한다.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ISO 14064-3 온실가스 - 제3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규칙 및 지침 ISO 14066 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검증팀에 관한 적격성 요구사항 ISO 14097 온실가스 -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와 재무 활동을 평가 및 보고하는 프레임워크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 - 용어 및 일반 원칙 ISO/IEC 17029:2019 적합성 평가 -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3. 용어 정의 본 규격의 목적에 따라 ISO/IEC 17000의 용어와 정의 및 다음을 적용한다. ISO 와 IEC는 표준에 사용되는 용어 데이터 베이스를 다음 주소에서 운용하고 있다: ISO 온라인 검색 플랫폼: https://www.iso.org/obp IEC 일렉트로피디아: http://www.electropedia.org/	**3. 용어 정의** 본 문서의 목적에 의거하여, ISO/IEC 17000 및 ISO/IEC 17029:2019에 명시된 용어 및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ISO 및 IEC는 용어 사용의 표준화를 위해 다음의 주소에서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ISO 온라인 검색 플랫폼: https://www.iso.org/obp IEC 일렉트로피디아: http://www.electropedia.org/
3.1 주장 claim 고객 (3.13)이 선언한 정보 비고 1 주장은 타당성평가 (3.2)/검증 (3.3)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비고 2 주장은 특정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나 어떤 기간 동안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비고 3 주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타당성성평가 기관 (3.4)/검증 기관 (3.5)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 일관된 평가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비고 4 주장은 보고서, 진술, 선언, 사업계획, 또는 취합된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3.1 환경 정보 관련 용어** **3.1.1 환경 environment**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비롯한, 조직 (3.2.2)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비고 1 주변 여건은 조직 내부에서 지역, 역내 및 국제 시스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 비고 2 주변 여건은 생물다양성, 생태계, 기후 혹은 기타 특징으로 묘사될 수 있다. [출처: ISO 14001:2015 3.2.1항]
3.2 타당성 평가 validation 특정 미래에 의도된 사용 또는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주장 (3.1)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	**3.1.2 환경측면 environmental aspect** 환경 (3.1.1)과 상호작용하거나 할 수 있는 조직(3.2.2)의 활동 또는 제품 혹은 서비스 요소 [출처: ISO 14001:2015 3.2.2항을 개정함 –비고 삭제]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하는 것 비고 1 객관적 증거는 실재하거나 시뮬레이션된 자료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비고 2 타당성평가는 향후 활동결과물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정, 제한사항 및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간주된다. 비고 3 예측 정보에 근거한 미래의 의도된 사용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가능성 확인) 비고 4 그림 C.1 은 타당성 평가가 적용되는 방식을 도식화하고 있다. [출처: ISO 9000:2015 3.8.13, 개정 – "주장에 대한" 및 "미래" 라는 표현이 정의 및 비고에 추가되었다.] **3.3 검증 verification**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주장 (3.1)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 비고 1 검증은 주장이 중요성 측면에서 올바르며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역사적인 데이터나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간주된다. 비고 2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수집된 결과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진실성 확인) 비고 3 그림 C.2 은 검증이 적용되는 방식을 도식화하고 있다. [출처: ISO 9000:2015 3.8.12, 개정 — "주장에 대한" 이라는 표현이 정의 및 비고에 추가되었다.] **3.4 타당성평가 기관 validation body** 타당성 평가 (3.2)를 수행하는 기관 비고 1 타당성평가기관은 조직이거나 조직의 일부분일 수 있다. **3.5 검증 기관 verification body** 검증 (3.3)을 수행하는 기관	**3.1.3 환경 성과 environmental performance** 환경측면 (3.1.2) 관리와 연관된 측정 가능한 결과 [출처: ISO 14001:2015 3.4.11항을 개정함 – "성과"를 "측정가능한 결과" 로 대체함.] **3.1.4 환경 정보 environmental information** 환경 조건 또는 환경 성과 (3.1.3)와 관련된 정성적 혹은 정량적 특성을 지닌 주제 비고 1 환경 정보에는 조직 (3.2.2), 프로젝트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거량, 감축량 혹은 제거 강화 (예. ISO 14064-1 및 ISO 14064-2 참고), 환경 발자국 (예. 제품탄소발자국에 대해서는 ISO 14067을, 물 발자국에 대해서는 ISO 14064를, 전과정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ISO 14044를 참고) 또는 환경 보고서 (예. ISO 14016 참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고 2 ISO 14033은 검토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환경 수량 정보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 및 명시한다. **3.1.5 환경 정보 성명서 environmental information statement** 환경 정보 (3.1.4)에 대한 선언 비고 1 환경 정보 성명서는 한 시점을 나타내거나 기간을 아우를 수 있다. 비고 2 책임 당사자 (3.2.3)가 제공하는 환경 정보 성명서는 검증심사원 (3.3.5) 혹은 타당성 평가자 (3.3.6)에 의해 명확히 파악 가능하고, 적정 기준 (3.3.20)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 혹은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비고 3 환경 정보 성명서는 보고서; 선언서; 경제, 재정 혹은 통화 가치평가서; 환경 제품 선언서; 전과정 평가 보고서; 기후변화 취약성 또는 적응 평가서; 프로젝트 계획서; 라벨 표지 혹은 로고에 제공될 수 있다. 비고 4 "환경 정보 성명서"란 용어는 ISO/IEC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비고 1 검증기관은 조직이거나 조직의 일부분일 수 있다.	17029:2019 3.1항에서 사용된 "주장"이란 용어에 해당한다.
3.6 타당성평가 진술 validation statement 타당성평가 (3.2)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관 (3.4)의 선언 비고 1 타당성평가 진술은 "결정", "의견" 또는 "보고서" 등 특정 프로그램 관련 용어를 언급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비고 2 타당성평가 진술은 발행된 시점의 상황만을 반영한다. 비고 3 타당성평가 진술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권고 (comment)를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장 (3.1) 이 사실임을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1.6 환경 정보 프로그램 environmental information programme** 환경 정보 성명서 (3.1.5)를 제공하는 규칙 및 절차 비고 1 환경 정보 프로그램은 국제, 역내, 국가 혹은 하위 국가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비고 2 프로그램을 "스킴 (제도)"라 부를 수 있다. 비고 3 환경 정보 프로그램에 따른 검증 대상의 예시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온실가스 인벤토리, 탄소 및 물 발자국, 환경 정보 (3.1.4) 등이 있다. 비고 4 환경 정보 프로그램은 타당성 평가 (3.3.16) 또는 검증 (3.3.15)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3.7 검증 진술 verification statement 검증 (3.3) 프로세스 결과물에 대한 검증 기관 (3.5)의 선언 비고 1 검증 진술은 "결정", "의견" 또는 "보고서" 등 특정 프로그램 관련 용어를 언급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비고 2 검증 진술은 발행된 시점의 상황만을 반영한다. 비고 3 검증 진술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권고 (comment)를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장 (3.1) 이 사실임을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2 인원 및 조직 관련 용어** **3.2.1 고객 client** 타당성 평가 (3.3.16) 혹은 검증 (3.3.15)을 요청한 조직 (3.2.2) 또는 개인 비고 1 고객은 책임당사자 (3.2.3), 프로그램 소유자 (3.3.3), 사용 예정자 (3.2.4)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출처: ISO/IEC 17029:2019 제3.13항을 개정함- 비고 1 추가]
3.8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validation programme 특정 부문에서 타당성평가 (3.2) 활동을 수행하는데 대한 규칙, 절차 및 관리 비고 1 타당성평가 프로그램은 국제, 지역, 국가, 지방 정부 단위 또는 특정 부문별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3.2.2 조직 organiz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권한 및 관계를 통해, 자체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출처: ISO 14001:2015, 제3.1.4항을 개정함 - 비고 1 삭제] **3.2.3 책임 당사자 responsible party** 환경 정보 성명서 (3.1.5)을 제공하고 정보를 지원할 책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비고 1 책임당사자는 조직(3.2.2)이나 프로젝트의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비고 2 프로그램을 스킴이라고도 한다. 비고 3 본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아우르는 집합적 표준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3.9 검증 프로그램 verification programme** 특정 부문의 검증 (3.3)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방법 비고 1 검증 프로그램은 국제, 지역, 국가, 지방 정부 단위 또는 특정 부문별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프로그램을 스킴이라고도 한다. 비고 3 본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을 아우르는 집합적 표준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3.10 프로그램 소유자 programme owner** 특정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3.8) 또는 검증 프로그램 (3.9)의 개발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 비고 1 프로그램 소유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정부당국, 무역협회, 타당성평가/검증기관 그룹, 외부 프로그램 소유자 등이 될 수 있다. [출처: ISO/IEC 17065:2012, 3.11, 개정 – 정의에서 “스킴 소유자”는 “프로그램 소유자”로 대체되었으며 “인증 스킴”은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또는 검증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3.11 타당성평가/검증 범위 scope of validation/verification** 다음에 대한 식별 활동이 포함된다. - 주장의 경계를 포함한, 타당성평가(3.2) 또는 검증(3.3)의 대상이 되는 주장(3.1) - 적용되는 타당성평가 프로그램 (3.8)/검증 프로그램(3.9) - 주장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의 준거가 되는 발행일을 포함한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	개인 또는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검증심사원 (3.3.5) 또는 타당성 평가자 (3.3.6)을 선임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비고 2 책임 당사자가 고객 (3.2.1) 일 수 있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2.3항을 개정함 – 온실가스 및 제품에 대한 언급 삭제. 비고 2 추가] **3.2.4 사용 예정자 intended user**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환경 정보에 의존하는 대상으로써, 환경 정보 (3.1.4)보고서에 의해 식별된 개인 또는 조직 (3.2.2) 비고 1 사용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혹은 비정부기구와 같이, 고객 (3.2.1), 책임 당사자 (3.2.3), 프로그램 소유자 (3.3.3), 규제기관, 재정단체, 대중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2.4항을 개정함 –온실가스에 대한 언급 삭제. 비고 1 수정.] **3.2.5 기술 전문가 technical expert**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3.3.7)에게 특정 지식 또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사람 비고 1 특정 지식이나 전문성은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되는 조직 (3.2.2), 프로세스 또는 활동과 관련되거나, 재무, 현지 규제, 언어 혹은 문화와 연관된 것이다. 비고 2 기술 전문가는 타당성 평가팀 또는 검증심사팀에서 검증심사원 (3.3.5) 또는 타당성 평가자 (3.3.6)로서 활동할 수 없다. [출처: ISO 19011:2018, 제3.16항을 개정함 –정의 및 비고 2에서 “심사팀”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으로 대체함. 비고 1 수정] **3.2.6 적격성 competence**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과 스킬을 적용하는 능력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출처: ISO 14066:2011, 제3.1.4항을 개정함 – 비고 삭제]
3.12 공평성 impartiality 객관성의 실재 비고 1 객관성은 타당성평가 기관 (3.4)/검증 기관 (3.5)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해상충이 해결됨을 의미한다. 비고 2 공평성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타 용어로는 “독립성”, “이해상충이 없음”, “편향되지 않음”, “편견 없음”, “중립성”, “공정성”, “열린 자세 ”, “공명정대”, “객관성”, “균형” 등이 있다. [출처: ISO/IEC 17021-1:2015, 3.2, 개정 –비고 1에서 "인증기관의 후속 활동"이라는 표현은 "타당성평가 기관/검증 기관의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3.2.7 부적합 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이행 비고 1 일부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과 연관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을 미준수로 간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3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관련 용어** **3.3.1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 validation programme** 특정 영역 혹은 분야에서 타당성 평가 (3.3.16)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 비고 1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은 국제, 역내, 국가, 하위국가, 분야별 혹은 조직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프로그램을 “스킴 (제도)”라 부를 수 있다. 비고 3 본 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커버하는 표준 집합이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다. 비고 4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은 타당성 평가기관 (3.3.26)과 고객 (3.2.1)사이의 계약 (3.3.13)서 처럼 간단하거나, 다양한 상세 및 복잡 수준의 규칙 집합을 나타내는 정식 프로그램 문서를 일컬을 수도 있다. [출처: ISO/IEC 17029:2019 제3.8항을 개정함– 정의에 “혹은 분야” 추가. 비고1에 “조직적” 추가. 비고 4 추가]
3.13 고객 client 타당성평가 (3.2) 또는 검증 (3.3)을 요청하는 조직 또는 사람 **3.14 자문 consultancy** 타당성평가 (3.2)/검증(3.3)의 대상이 될 주장(3.1)의 수립에 참여 비고 1 “자문”이라는 용어는 타당성평가 기관 (3.4)/ 검증기관 (3.5)의 활동 및 인원,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 연관되거나 연계된 조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비고 2 주장 수립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장으로 이어지는 대상 설계에 참여하거나 주장에 대한 준비를 돕기 위해 특정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비고 3 교육훈련과정이 타당성평가/ 검증의 대상이 될 주장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강사로 교육훈련을 마련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에 한한다는(즉, 강사가 고객(3.13) 에게 특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음) 조건 하에	**3.3.2 검증 프로그램 verification programme** 특정 영역 혹은 분야에서 검증 (3.3.15)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 비고 1 검증 프로그램은 국제, 역내, 국가, 하위국가, 분야별 혹은 조직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다. 비고 2 프로그램은 “스킴 (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 비고 3 본 문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커버하는 표준 집합이 프로그램 역할을 할 수 있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서, 자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비고 4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할 주장의 수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 정보의 제공은 자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타당성평가/검증 요구사항의 의미 및 의도에 대한 설명 - 연계된 이론, 방법론, 기법 또는 도구의 설명 - 관련된 최상의 관행에 대한 비기밀 정보 공유 **3.15 보증 수준 level of assurance** 주장(3.1)에 포함된 확신의 수준 비고 1 주장의 보증수준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정의될 수 있다. (예: 절대적 보증, 합리적 보증, 제한적 보증) **3.16 중요한 material** 의도된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비고 1 중요성은 잘못된 선언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주장(3.1)의 신뢰성이나 의도된 사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고 2 중요성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 있다.	비고 4 검증 프로그램은 검증기관 (3.3.27)과 고객 (3.2.1) 간의 계약 (3.3.13)서처럼 간단하거나, 다양한 상세 및 복잡 수준의 규칙 집합을 나타내는 정식 프로그램 문서를 일컬을 수도 있다. [출처: ISO/IEC 17029:2019 제3.9항을 개정함 – 정의에 “혹은 분야” 추가. 비고 4 추가] **3.3.3 프로그램 소유자 program owner** 환경 정보 프로그램 (3.1.6),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 (3.3.1) 또는 검증 프로그램 (3.3.2)의 개발 혹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조직 (3.2.2) 비고 1 프로그램 소유자는 기관 자체, 정부 당국, 무역협회,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의 단체, 외부 프로그램 소유자 혹은 기타일 수 있다. 비고 2 프로그램 소유자는 스킴 (제도)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출처: ISO/IEC 17029:2019 제3.10항을 개정함– 추가된 “특정”을 “환경 정보 프로그램”으로 대체함. 비고 2 추가] **3.3.4 팀장 team leader**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3.3.7)을 관리하는 사람 [출처: ISO 14066:2011, 제3.1.2항] **3.3.5 검증심사원 verifier** 검증 (3.3.15)을 수행하고 보고할 책임을 보유한 사람 [출처: ISO 14064-3:2019 제3.2.6항을 개정함 –"사람” 앞에 “적격하고 공평한” 문구 삭제] **3.3.6 타당성 평가자 validator** 타당성 평가 (3.3.16)를 수행하고 보고할 책임을 보유한 사람 [출처: ISO 14064-3:2019 제3.2.7항을 개정함 – "사람” 앞에 “적격하고 공평한” 문구 삭제.]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3.3.7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validation/verification team 타당성 평가/검증 (3.3.16/3.3.15) 활동을 수행하는 한 명 이상의 사람 비고 1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중 한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한다. 비고 2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훈련 중인 타당성 평가자 또는 검증심사원을 포함할 수 있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2.8항을 개정함 – 비고 2 추가] **3.3.8 검토자 reviewer** 타당성 평가 (3.3.16) 또는 검증 (3.3.15) 활동 및 결론을 검토하는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3.3.7)의 일원이 아닌 사람 [출처: ISO 14064-3:2019 제3.2.9항을 개정함– 용어에서 “독립적” 삭제. 정의에서 “사람” 앞의 “적격한” 삭제.] **3.3.9 공평성 impartiality** 객관성의 존재 비고 1 객관성이란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해상충의 해소된 상태를 의미한다. 비고 2 공평성 요소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그 밖의 용어로는 “독립성”, “이해상충으로부터의 자유”, “편향으로부터의 자유”, “편견의 부재”, “중립성”, “공정성”, “열린 마음”, “공평함”, “분리” 및 “균형”이 있다. [출처: ISO/IEC 17021-1:2015, 제3.2항을 개정함 – 비고 1에서 “기관” 앞에 “인증” 삭제] **3.3.10 자문 consultancy** 환경 정보 성명서 (3.1.5) 작성을 뒷받침하는 주제에 관한 특정 전문성 제공 비고 1 훈련 제공자로써 교육/훈련을 준비하거나 참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여하는 것은, 훈련과정이 타당성 평가 (3.3.16), 검증 (3.3.15) 또는 타당성 평가나 검증되는 환경 정보 성명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에 한 한다는 (즉, 훈련 제공자가 고객에게 특정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조건 하에, 자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3.11 이의제기 appeal 검증 의견서 (3.3.23) 또는 타당성 평가 의견서 (3.3.25) 발행과 관련하여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 3.3.12 불만 complaint 이의 제기 (3.3.11)와는 다른 것으로, 개인 또는 조직 (3.2.2)이 기관에게 그 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 [출처: ISO/IEC 17000:2004, 제6.5항을 개정함- "적합성평가 기관 혹은 인정기관"을 "기관"으로 대체함] 3.3.13 계약 engagement 보통 계약 (contract)의 형태로 규정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당성 평가 기관 (3.3.26) 혹은 검증 기관 (3.3.27)과 고객 (3.2.1) 간의 협정 비고 1 "계약"이란 단어는 타당성 평가 (3.3.16), 검증 (3.3.15) 또는 합의된 절차 (3.3.17)에 대한 합의와 같은 계약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일컫기도 한다. 3.3.14 보증 assurance 과거 이력정보에 해당하는 환경 정보 성명서 (3.1.5)에 대한 신뢰 3.3.15 환경 정보 검증 environmental information verification/검증 verification 성명서가 중요 수준으로 올바르며 기준 (3.3.20)에 부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합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과거 이력 데이터 및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정보 성명서 (3.1.5)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비고 1 의견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검증 활동을 합의된 절차 (3.3.17)라 부른다. 비고 2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 정보 검증”이란 용어를 “검증”으로 축약한다. **3.3.16 환경 정보 타당성 평가 environmental information validation/타당성 평가 validation** 미래 활동의 결과에 대한 환경 정보 성명서 (3.1.5)를 뒷받침해주는 가정, 제약사항 및 방법의 합당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 비고 1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 정보 타당성 평가”란 용어를 “타당성 평가” 로 축약한다. **3.3.17 합의된 절차 agreed-upon procedures** 검증 (3.3.15) 활동의 결과는 보고하지만 의견서 (3.3.23)는 제공하지 않는 계약 (3.3.13) 비고 1 합의된 절차 (AUP)는 보증 (3.3.14)을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6.4항을 개정함 – 비고 1 추가] **3.3.18 보증 수준 level of assurance** 환경 정보 성명서 (3.1.5)에 대한 신뢰 정도 비고 1 보증 (3.3.14)은 과거 이력 정보에 대해 제공된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6.5항을 개정함 –“온실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비고 1 추가] **3.3.19 중요성 materiality** 개별적 또는 총체적 왜곡 (3.3.21)이사용 예정자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3.2.4)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 [출처: ISO 14064-3:2019 제3.6.9항] **3.3.20 기준 criteria** 환경 정보 성명서 (3.1.5)의 비교 대상이 되는 정책, 절차 혹은 요구사항 비고 1 기준은 정부, 규제당국, 환경 정보 프로그램 (3.1.6), 자발적 보고 이니셔티브, 표준, 규약 혹은 내부 절차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비고 2 ISO/IEC 17029에 사용된 "규정된 요구사항" 대신에 "기준"을 사용한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6.10항을 개정함 – "온실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비고 1와 2 추가] **3.3.21 왜곡 misstatement** 환경 정보 성명서 (3.1.5) 상의 오류, 누락, 잘못된 보고 혹은 기술 비고 1 왜곡은 정성적 혹은 정량적일 수 있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6.15항을 개정함 – "온실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비고 1 추가] **3.3.22 중요한 왜곡 material misstatement** 사용 예정자 (3.2.4)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정보 성명서 (3.1.5) 상의 개별적인 왜곡 (3.3.21) 또는 총체적인 실제 왜곡 [출처: ISO 14064-3:2019 제3.6.17항을 개정함 – "온실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로 대체함.] **3.3.23 검증 의견서 verification opinion** 환경 정보 성명서 (3.1.5)가 중요 수준으로 올바르고 기준 (3.3.20)에 부합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 사용 예정자 (3.2.4)에게 제공하는 공식 서면 선언서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비고 1 "검증 의견서"란 용어는 ISO/IEC 17029:2019 제3.7항의 "검증 성명서"의 한 유형을 말한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6.18항을 개정함 – 용어에서 "/타당성 평가" 삭제. 정의에서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보고서 상의 온실가스 성명서"를 "환경 정보 성명서 가 중요 수준으로 올바르고"로 대체함. 비고 1 추가.] **3.3.24 발견사실 보고서 report of factual findings** 합의된 절차 (3.3.17)의 문서화된 산출물 비고 1 "발견사실 보고서"란 용어는 ISO/IEC 17029:2019 제3.7항의 "검증 성명서"의 한 유형을 말한다. **3.3.25 타당성 평가 의견서 validation opinion** 환경 정보 성명서 (3.1.5)에 수록된 예측 및 전망 수립 시 사용된 가정, 방법 및 제약사항의 합당성에 관해 사용 예정자 (3.2.4)에게 제공하는 공식 서면 선언서 비고 1 "타당성 평가 의견서"란 용어는 ISO/IEC 17029:2019 3.6항의 "타당성 평가 성명서"의 한 유형을 말한다. 비고 2 추정, 방법 및 제약사항에 대한 합당성은 해당 기준 (3.3.20)에 대한 부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출처: ISO 14064-3:2019 제3.6.18항을 개정함– 용어에서 "검증/" 삭제. 정의에서 "책임 당사자의 온실가스 보고서 상의 온실가스 성명서 및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를 "환경 정보 성명서에 수록된 예측 및 전망 수립 시 사용된 가정, 방법 및 제약사항의 합당성에 관해"로 대체함. 비고 1과 2 추가] **3.3.26 타당성 평가기관 validation body** 타당성 평가 (3.3.16)를 수행하는 기관 비고 1 타당성 평가기관은 조직 (3.2.2)이거나 조직의 일부분 일 수 있다. 비고 2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해를 돕기 위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을 "기관"으로 축약한다. [출처: ISO/IEC 17029:2019 제3.4항을 개정함- 비고 2 추가] **3.3.27 검증기관 verification body** 검증 (3.3.15)을 수행하는 기관 비고 1 검증기관은 조직 (3.2.2)이거나 조직의 일부분 일 수 있다. 비고 2 본 문서에서는 문장의 복잡성을 낮추고 이해를 돕기 위해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을 "기관"으로 축약한다. [출처: ISO/IEC 17029:2019 제3.5항을 개정함 - 비고 2 추가]
4. 원칙	**4. 원칙**
4.1 일반사항 4.1.1 본 절에 서술된 원칙은 본 규격에 기술된 요구사항의 기초가 된다. 이 원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지침으로 적용된다. 원칙은 요구사항은 아니다. 4.1.2 타당성평가/검증의 전반적인 목적은 모든 당사자에게 타당성 평가를 거친/검증된 주장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있다. 타당성평가/검증의 가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수행한 공평한 평가를 통해 정립된 신뢰에 있다. 4.1.3 타당성평가/검증에 대한 이해관계자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고객 b) 프로그램 소유자 c) 타당성평가/검증이 이루어진 주장을 사용하는 사용자 d) 규제 당국	**4.1 일반** ISO/IEC 17029:2019 4.1항을 따르도록 한다. 비고 ISO/IEC 17029의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언급은 본 문서의 기준 (criteria)을 의미한다.
4.2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원칙	**4.2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원칙**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4.2.1 증거 기반 의사결정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타당성평가/검증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방법을 사용하며, 충분하고 적절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다.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평가/검증을 통해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한다. 4.2.2 문서화 타당성평가/검증 평가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특정한 기준에 대한 주장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4.2.3 공정한 보고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발견사항, 결론 및 진술은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 고객 간에 해결되지 못한 이견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 동안 직면한 주요 난제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4.2항을 따르도록 한다.
4.3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원칙 4.3.1 공평성 의사 결정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얻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며 다른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평성에 대한 위협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사리추구: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타당성평가와/검증과 관련하여 공평성에 위협이 되는 사항은 금전적인 사리추구이다. b) 자체검토: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이 수행한 작업을 스스로 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협. c) 친분관계(또는 신임): 개인 또는 기관이 타인과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이들을 신임함으로써 타당성평가를/검증을 위한 증거를 찾지 않아 발생하는 위협. d) 협박: 교체 또는 상관에게 보고하겠다는 위협과 같이, 개인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강압을 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위	**4.3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원칙** ISO/IEC 17029:2019 4.3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협 4.3.2 적격성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효과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지식, 스킬, 경험, 교육훈련, 지원 기반구조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 4.3.3 기밀유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습득하거나 생성한 기밀정보는 기밀이 준수 되어야하고 적절치 않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4.3.4 개방성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4.3.5 책임 주장 및 적용되는 특정 요건에 대한 해당 주장의 적합성에 대해 책임은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아닌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고객에게 있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충분하고 적절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작성할 책임이 있다. 4.3.6 불만 대응 타당성평가/검증의 이해관계자는 불만을 제기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불만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불만에 대한 대응은 타당성평가/검증 결과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무결성과 신뢰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4.3.7 리스크 기반 접근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적격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공평한 타당성평가/검증을 제공하는데 있어 수반되는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에는 다음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타당성평가/검증 요구사항과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목적 b) 공평성 인식, 적격성, 일관성, 현실성 c) 법규, 규범 및 배상책임과 관련된 사안 d) 타당성평가/검증이 수행되는 고객 조직과, 그 조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직의 관리 시스템 및 운영 환경, 지리적 위치 등 e) 관리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다해도 중요한 허위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장에 포함된 매개변수의 민감성 f) 달성해야 하는 보증수준 및 타당성평가/검증 과정에 사용되는 이에 상응하는 증거 수집 g) 이해관계자의 인식 h) 고객에 의한 오도된 주장 또는 마크 오용 i) 리스크 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회	
5. 일반 요구사항	**5. 일반 요구사항**
5.1 법인체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인체이거나 법인체의 규정된 일부로서, 기관의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비고 정부가 운영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해당 정부의 지위에 근거한 법인체이다.	**5.1 법인체** ISO/IEC 17029:2019 5.1항을 따르도록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적 지위를 문서로 기술해야 하며, 기관 소유자 이름, 만일 관리자가 다르다면 그 이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5.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대한 책임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5.2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에 대한 책임** ISO/IEC 17029:2019 5.2항을 따르도록 한다. 비고 ISO/IEC 17029에서 언급된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는 본 문서의 “타당성 평가/검증 의견서”을 의미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합의된 절차 (AUP) 계약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절차 수행의 결과로 발행되는 발견사실 보고서에 대한 책임이 있다.
5.3 공평성 관리 5.3.1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은 공평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5.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금전적 또는 기타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5.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기 위해 활동과 관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5.3 공평성 관리** ISO/IEC 17029:2019 5.3항을 따르도록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자신의 운영활동과는 독립된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평성을 확립해야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모니터링에는 해당 인원의 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비고 1 본 규격의 공평성 요구사항은 제1자 기관, 제2자 기관 및 제3자 기관에 대해 동일하지만, 각각의 리스크 평가에 있어 투입물과 산출물은 다를 수 있다. 비고 2 개방성과 대중적 인식을 포함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조언할 균형있게 대변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 이 때 단일 이해관계자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협의의 한 방법이다. 비고 3 프로그램에 따라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위해 적절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할 수 있다. 비고 4 관계는 소유권, 지배구조, 관리, 인력, 공유자원, 재정, 계약, 마케팅(브랜딩 포함)에 기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관계가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공평성에 반드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5.3.4 공평성에 대한 위협이 파악되면, 공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5.3.5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최고경영자는 공평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5.3.6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할 때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하며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 5.3.7 검토(9.6)와 의사 결정 (9.7)은 타당성평가/검증을 수행(9.5)한 인원과 다른 인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5.3.8 타당성 평가 와 검증을 동일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공평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예: 자체 검토 및 숙지)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5.3.9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동일한 고객의 동일한 주장에 대해 자문과 타당성 평가/검증을 모두 제안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3.10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과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의 관계가 수용할 수 없는 공평성의 위협을 야기할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같은 주장에 대해 자문을 받은 고객에게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잠재적인 고객도 포함된다. 5.3.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활동은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의 활동과 연계되어 홍보되거나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 5.3.1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자문기관이 해당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을 이용하면 타당성평가/검증이 간단 용이하고 신속 저렴할 것이라고 언급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부적절한 연계 또는 발언을 하는 것을 인식 (예: 불만을 통해)하였을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특정 자문기관을 이용하면 타당성평가/검증이 간단, 용이하고 신속하거나 저렴할 것임을 언급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5.3.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른 사람, 기관 또는 조직의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공평성 위협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외주처리 기관들의 행위가 포함된다.	
5.4 배상책임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기관이 운영되는 지역 및 각각의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준비(예: 보험 또는 예치금)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4 배상책임** ISO/IEC 17029:2019 5.4항을 따르도록 한다.
6 조직구조 요구사항	**6 조직구조 요구사항**
6.1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자 6.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관리	**6.1 조직구조 및 최고 경영자** ISO/IEC 17029:2019 6.1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되어야 한다. 6.1.2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은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6.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조직구조, 의무, 관리의 책임 및 권한, 타당성평가/검증에 관여하는 기타 인원, 그리고 모든 위원회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법인체의 일부인 경우, 조직구조에는 권한 체계 및 동일한 법인체 내 다른 부문과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6.1.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총괄적 권한 및 책임을 갖는 최고경영자(이사회, 개인으로 구성된 그룹 또는 개인)를 식별하여야 한다. a) 기관의 운영에 관한 방침 개발 및 프로세스의 수립 b) 방침과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한 감독 c) 공평성의 보장 d) 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e)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및 요구사항 개발 f)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 성과 g)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대한 결정 및 발행 h) 필요 시 기관을 대신하여 규정된 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개인에 대한 권한의 위임 i) 계약 관련 사항 j) 인원의 적격성 요구사항 k)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책임 l)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 m)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위한 충분한 자원 제공	
6.2 운영관리 6.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적 지위, 관계 또는 지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해당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운영통제 하에 있는 지사, 파트너, 대리인, 프랜차이즈 등이 제공하는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6.2.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수행 활동에 대한 적	**6.2 운영관리** ISO/IEC 17029:2019 6.2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절한 관리 수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프로세스와 부문, 인원의 적격성, 관리 통제체계, 운영에 대한 보고와 원격 접근 및 기록이 포함된다. 6.2.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러한 활동이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적격성, 일관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자원 요구사항	**7. 자원 요구사항**
7.1 일반사항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시설, 장비, 시스템 및 지원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한다. 비고 인원, 시설, 장비, 시스템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7.1 일반사항** ISO/IEC 17029:2019 7.1항을 따르도록 한다.
7.2 인원 7.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적격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고 인원에는 기관의 직원, 임원진 및 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되며,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이 활용하는 모든 계약직 인원들이 포함된다. 7.2.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인원에게 다음을 서약하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협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a) 공평성 및 기밀준수를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프로세스와 지시 준수 b)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고객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 (예: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의 고용자)이 이전 및/또는 현재 연관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림 c) 자신 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실질적 또는 예측되는 이해상충이 인지되는 경우 이를 밝힘	**7.2 인원** ISO/IEC 17029:2019 7.2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7.2.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인원의 활동, 또는 이들과 관련된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5.3.3참조) 야기되는 공평성 위협을 식별하기 위한 입력 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7.2.4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모든 내외부 인원은 공평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ISO/IEC 17029:2019 7.2.4항의 경우, 타당성평가자 및 검증심사원은 제4항에 명시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도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데 주의한다.
7.2.5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이 되는 주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원은 사전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된 기한은 공평성 위협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이여야 한다. 비고 이 기한은 프로그램에 규정될 수 있다.	ISO/IEC 17029:2019 7.2.5항에서 언급한 규정한 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 한다.
7.2.6 위원회 위원, 계약자, 외부기관의 인원, 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을 포함하는 인원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거나 생산한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7.2.7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모든 인원에게 각자의 의무, 책임 및 권한에 대해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7.3 인원의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	**7.3 인원의 적격성 관리 프로세스**
7.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관여하는 인원의 적격성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7.3.1 ISO/IEC 17029:2019 7.3항을 따르도록 한다.
7.3.2 이 프로세스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a)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의 각 기능별로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인원의 적격성 기준을 결정 - 일반적인 타당성평가 및 검증의 개념 (예: 증거수집, 리스크, 허위진술, 보증수준, 중요성)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고객이 제시하는 주장의 형식 및 전형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	7.3.2 ISO/IEC 17029:2019 7.3.1항에서 요구하는 프로세스 외에, 기관은 다음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이행 및 유지해야 한다: a) 각각의 운영 프로그램 및 분야에 대해 요구되는 적격성을 규정한다; b) 검증심사원, 타당성 평가자, 기술전문가, 검토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적정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c) 환경 정보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 자신의 범위 내 분야 혹은 영역과 연관된 특정 사항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내부 또는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예: 특정 타당성 평가/검증 프로세스에 요구되는 적격성) b)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식별하고, 필요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c) 인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요구되는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 d)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기능 별로 공식적으로 인원에게 권한 부여 e) 인원의 성과 모니터링 비고 인원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외부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해당 시, 부속서 D, E 및 F에 명시된 인원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및 적격성을 따르도록 한다.
7.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의 적격성을 입증하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교육, 훈련, 경력, 성과 모니터링, 소속 및 전문적 지위가 포함된다.	7.3.3 ISO/IEC 17029 7.3.3항과 관련하여, 성과 모니터링은 주기적이어야 한다는 데 주의한다. 모니터링 기술에는 연간 성과검토, 보고서 검토, 현장 모니터링 및 인터뷰 등이 있다. 사용되는 모니터링 기술은 타당성 평가/검증 결과에 미치는 성과 영향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7.3.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적격성을 갖춘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 명의 개인이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의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면, 해당 인력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7.3.5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비롯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 자격 (eligibility) 요구사항; b) 서로 다른 관할 구역에서의 이행 (해당되는 경우); c)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 7.3.6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 관련 활동 및 기술;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b) 관련 기술 및 분야 이슈를 비롯한 수량화, 모니터링 및 보고. 7.3.7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의 능력을 비롯하여, 환경정보 성명서를 평가하는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 책임 당사자가 관련 환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 수집, 분석 및 보고하고 있는지, 왜곡 및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 결정하는 정보 시스템을 평가한다; b) 증거 수집 계획을 구상한다; c)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시스템과 연관된 리스크를 분석한다; d) 데이터 및 데이터 시스템 상의 장애를 파악한다; e) 환경 정보 성명서의 중요성에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 흐름의 영향을 평가한다. 7.3.8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관련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7.3.9 타당성 평가/검증 팀장은 다음을 갖춰야 한다: a)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목표 부합을 위해,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관리를 위한 7.3.1항부터 7.3.5항에까지 상세히 기술된 적격성의 충분한 지식 및 전문성 b)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을 이행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 c) 심사팀을 관리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
7.4 외주처리 적용되는 프로그램에서 외주처리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외주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타당성평가에/검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b) 계약 활동(9.3),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결정 및 진술서 발행 (9.7) 은 외주처리하지 않는다.	**7.4 외주처리** ISO/IEC 17029:2019 7.4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7.4 b항에 대하여, “계약 활동”이라 함은 고객과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의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c) 외주처리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개별 기관과 기밀준수 및 공평성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맺는다. d) 외주처리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이, 적격성, 공평성, 기밀준수 및 모든 적용되는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본 규격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보장한다. e) 고객으로부터 외주처리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얻는다. 비고 1 외주처리라 함은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타당성평가/검증기관 등, 다른 조직과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비고 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개인 또는 다른 조직 소속 인원을 고용하여 추가적인 자원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할 때, 이들 개인 또는 인원을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관리 시스템 하에서 운영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아웃소싱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고 이를 배제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고 1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특정 부문에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를 규정한다. - 타당성평가/검증 범위 - 타당성평가/검증 팀 및 기관에 대한 특정 적격성 기준 -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 타당성평가/검증의 증거 수집활동 - 타당성평가/검증 보고 비고 2 부속서 A 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를 기술하고 있다.	**8.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ISO/IEC 17029:2019 8항을 따른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9. 프로세스 요구사항	**9. 프로세스 요구사항**
9.1 일반사항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으로 다음 프로세스 단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 이전의 활동 (9.2) - 계약 (9.3) -계획 (9.4) - 타당성평가/검증 수행 (9.5) - 검토 (9.6) - 의사결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서 발행 (9.7) - 타당성 평가/검증 진술서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9.8) - 이의 처리 (9.9) - 불만 처리 (9.10) - 기록 (9.11)	**9.1 일반사항** ISO/IEC 17029:2019 9.1항을 따르도록 한다.
9.2 계약 선행사항 9.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에게 최소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사전계약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a) 고객명과 타당성평가/검증을 받고자 하는 주장 b) 고객의 활동이 수행된 장소 c) 타당성평가/검증을 받고자 하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및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d) 타당성평가/검증의 목적 및 범위 e) 보고서,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 f) 현 단계에서 파악된 적용 가능한 중요성 및 보증수준 g)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타 정보	**9.2 계약 선행사항** ISO/IEC 17029:2019 9.2항을 따르도록 한다. 비고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명서는 ISO/IEC 17029에서 제안된 주장 (claim)과 동등한 개념이다.
9.2.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사전계약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ISO/IEC 17029:2019 9.2.2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계약 형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a)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거나, 적용될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있음 b)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음(예: 맥락 및 복잡성) c) 타당성평가/검증 목적과 범위가 고객과 합의됨 d) 주장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을 수행할 특정 요구사항을 식별하였고 이 요구사항은 적합함 e) 해당되는 경우, 중요성 및 보증수준이 합의됨 f)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프로세스를 달성할 수 있음(예: 증거수집활동, 수집된 증거의 평가) g) 타당성평가/검증 기간을 추정할 수 있음 h)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에 요구되는 자원과 적격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확보하고 있음 i)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의 시간계획을 제안할 수 있음 9.2.3 고객이 제출한 정보를 계약 이전 단계에서 검토한 후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을 수락 또는 거부해야 한다.	계약의 형태에는 타당성 평가, 검증, 합의된 절차(AUP) 혹은 이들의 조합 등이 있다.
9.3 계약 9.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 및 관련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각의 고객과 다음과 같은 협약을 맺어야 한다. a) 제2자 및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예: 계약서) b) 제1자 타당성평가/검증의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 내부계약, 작업지시서, 또는 기타 구속력이 있는 내부협정과 같은 내부협약	**9.3 계약** ISO/IEC 17029:2019 9.3항을 따르도록 한다.
9.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러한 협약을 통해 고객이 최소한 다음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a) 타당성평가/검증 요구사항 b) 문서 확인 및 모든 관련된 프로세스, 지역, 기록 및 인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ISO/IEC 17029:2019 9.3.2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고객은 발행된 의견서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조치 실행 c) 해당되는 경우, 참관인 수용 d) 타당성평가/검증 인용 또는 마크 사용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규정 준수(10.3) 9.3.3 이러한 협약은 고객이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 다음의 세부조항을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에 대해 계약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a) 9.2.2에 나열된 항목 b) 프로그램이나 표준에 설정된 모든 추가 관련 요구사항 등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위한 특정 요구사항 9.3.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외부 단체에서 생성한 입력 정보 등,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입력 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9.4 기획 9.4.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에 착수하기 이전, 적용되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계획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a) 활동을 수행할 적격한 자원 배정 b) 주장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결정 c) 주장과 관련한 중대한 허위진술 리스크를 평가 d) 고객과 시간계획 및 접근권한 합의 e) 기술된 요구사항 및 그리고 b)와 c)의 결과와 일관되게 타당성평가를/검증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증거수집활동을 결정 f) c) 항목 및 잠재적인 오류, 누락 및 허위진술의 원인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이 마련한모든 조치를 고려한 증거수집계획 마련 g) 증거수집계획을 입력 정보로 고려하여 타당성평가/검증 계획(9.4.2) 수립 비고 1 증거수집계획과 타당성평가/검증 계획 준비는 반복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 있다.	**9.4 기획** 9.4.1 ISO/IEC 17029:2019 9.4항을 따르도록 한다. 9.4.2 ISO/IEC 17029:2019 9.4.1항에서 요구하는 기획 활동 외에도,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환경 정보 성명서에 관한 특성 및 복잡성을 이해하고, 계약 형태에 따른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전력적 분석을 수행한다; b) 기준에 대한 부적합 리스크를 평가한다. 그림 1 은 일반적인 기획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비고 2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증거수집계획을 '샘플링계획'으로 부른다. 비고 3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규정한 다른 요소로 중요성 또는 보증수준이 있다. 비고 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중대한 오류, 누락 또는 허위진술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평가계획 또는 검증계획, 증거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검증기관이 설계하는 구체성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보증수준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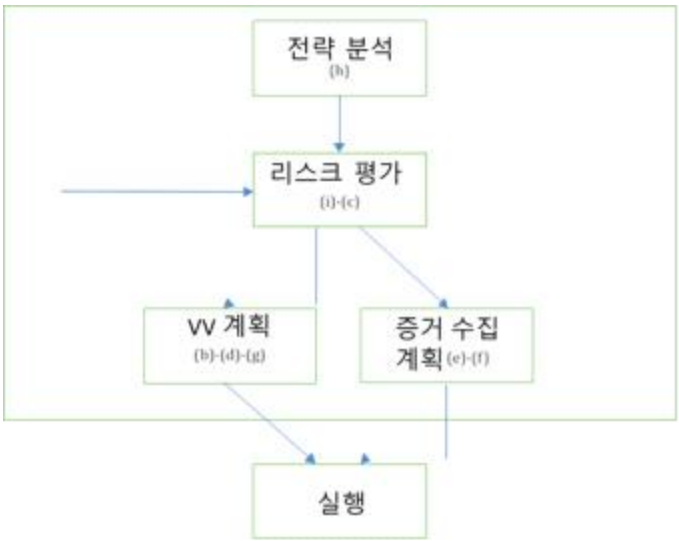 그림 1 —기획 프로세스의 단계
9.4.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활동과 일정을 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타당성 평가/검증 목표 및 범위 b) 타당성평가/검증팀원과 팀원의 역할 및 책임(예: 반장, 참관자) 식별 c)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시간계획 및 기간 d) 규정된 요구사항 9.4.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배정된 타당성평가/검증 팀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팀원 명단을 고객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9.4.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을 고객과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9.4.3 ISO/IEC 17029:2019 9.4.2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은 보증 수준 및 중요성을 포함해야 한다. 9.4.4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 및 증거 수집 계획은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5 다음의 경우,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 및 증거 수집 계획에 대한 개정사항은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타당성 평가/검증 활동의 범위 혹은 시기 변경; b) 증거 수집 절차의 변경; c)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의 위치 및 출처의 변경; d) 타당성 평가/검증 프로세스가 중요한 왜곡 혹은 부적합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 혹은 우려사항을 파악한 경우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9.5 타당성평가/검증 수행 9.5.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9.5.2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9.5.3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계획의 수정사항은 그 근거를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의사소통 하여야 한다. 9.5.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a) 원본 데이터/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 데이터/정보 관리 프로세스와 후속 분석 및 산정을 통한 추적성 보장 b) 허위진술 식별 및 해당 진술의 중요성 검토 c)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평가 9.5.5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준비하여야 한다. a) 9.5.4 활동 결과물에 대한 결론 b)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초안 c) 적용되는 경우, 보고서 비고 보고서는 개별 문서로 작성되거나 또는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초안을 담은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9.5 타당성평가/검증 수행** ISO/IEC 17029:2019 9.5항을 따르도록 한다. 비고 충분하고 객관적 증거에 대한 지침은 ISO 14066:2011의 부속서 A에 명시되어 있다.
9.6 검토 9.6.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검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9.6.2 검토는 타당성평가/검증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수행해야 한다. 비고 프로그램은 추가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타당성평가/검증의 계획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검토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6 검토** 9.6.1 ISO/IEC 17029:2019의 9.6항을 따르도록 한다. 9.6.2 ISO/IEC 17029:2009, 9.6.2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기획 (제9.4항 참고)에 참여하지 않았고,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일원이 아닌 자가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비고 검토를 수행하는 인원은 팀장의 지도 하에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한,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9.6.3 검토를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a) 협약 및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b)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과 적절성 c) 중대한 발견사항이 발견, 해결 및 문서화 되었는지 여부	9.6.3 ISO/IEC 17029:2019 9.6.3 c)항의 경우, “중대한 발견사항”이란 의견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이 파악한 왜곡 및 부적합 사항을 의미한다는 데 주의한다. 9.6.4 ISO/IEC 17029:2019 제9.6.3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검토를 통해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a)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팀원들의 적격성 여부 b) 다음을 통해 목적, 범위 및 중요성을 다루는 등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 지 여부 1) 전략적 분석 및 리스크 평가 2) 타당성 평가/검증 계획 3) 증거수집 계획 c) 타당성 평가/검증 시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이 내린 중대한 결정 d) 의견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 지 여부 e) 환경 정보 성명서가 타당하게 기술되었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9.6.4 검토자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평가/검증팀과 의사소통해야 한다. 타당성평가/검증팀은 검토자가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응하여야 한다.	
9.6.5 검토 시 9.11에 규정된 모든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기록이 가용해야 한다.	9.6.5 ISO/IEC 17029:2019 9.6.5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검토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결과를 비롯한 검토자가 계획 및 수행한 활동을 문서로 기록하는 경우, 검토자가 파악한 중대한 이슈가 의견서 발행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중 언제든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비고 때때로, 검토자는 ISO 14064-3:2019 3.4.9항에 명시된 “독립적 검토자”라 일컫기도 한다. 9.6.6 최종 의견서 혹은, 합의된 절차 (AUP)의 경우, 발견사실 보고서 발행에 앞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9.7 의사 결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9.7 의사 결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9.7.1 의사 결정 9.7.1.1 타당성평가/검증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 결정을 하여야 한다.	9.7.1 의사 결정 9.7.1.1 ISO/IEC 17029:2019 9.7.1항을 따르도록 한다. 9.7.1.2 ISO/IEC 17029:2019 9.7.1.1항에 언급된 “주장”이란 단어는 본 문서의 “환경 정보 성명서”를 의미한다는 데 주의한다. 주장은 중요 수준으로 옳고 규정된 기준을 부합한다고 기관이 결론을 내릴 때, 확정될 수 있다. 9.7.1.3 타당성 평가/검증기관은 혼합 계약 (mixed engagement) 하에서 AUP로 테스트 한 환경 정보 성명서의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발견사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부속서 C 참고).
9.7.1.2 의사결정은 타당성평가/검증 실행에 관여하지 않은 인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 프로그램은 추가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타당성평가/검증의 계획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7.1.4 ISO/IEC 17029:2019 9.7.1.2항의 경우, 의사 결정에 배정된 자가 검토자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한다. 의사 결정은 타당성 평가/검증 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내려야 한다 (제9.4항 참고).
9.7.1.3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는다.	9.7.1.5 ISO/IEC 17029:2019 9.7.1.3항에 언급된 “성명서”는 본 문서에서는 “검증 의견서 혹은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의미한다는 데 주의한다. 합의된 절차 (AUP)의 경우, 의사 결정은 발견사실 보고서를 통해 발행한다. 계약이 완료 전에 종료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의견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9.7.1.6 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 검증기관은 다음과 같이 해당 의견서의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a) 적정 의견 (unmodified); b)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 c) 부적정 의견 (adverse). 비고 부속서 A 는 적정 의견, 조건부 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 등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용어를 활용하여, 의견서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9.7.1.7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얻을 수 없을 때, 의견서 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관은 충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취득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해야 하고, 미발견된 중요 왜곡이 환경 정보 성명서에 중요하고 전반적(pervasive)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A.1 및 A.2 참고) 9.7.1.8 의견서 발행을 거절하지 않았거나 계약 형태가 합의된 절차 (AUP)가 아닌 한, 검증기관은 과거 이력 정보에 대한 성명서를 검증하는 계약 종료 시, 의견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용 예정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의견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과거 이력 증거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비고 적정 의견 (unmodified) 혹은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만 사용예정자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9.7.1.9 의견서 발행을 거절하지 않은 한, 타당성평가기관은 미래 활동 결과에 대한 성명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계약 종료 시, 의견서를 발행해야 한다. 정보 예측을 위해 사용된 가정, 제약사항 및 방법의 합당성에 대한 타당성 평가 의견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9.7.1.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9.7.2 타당성평가/검증 성명서 발행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진술(9.7.1)을 발행하는 경우, 성명서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고객명 b) 해당 진술이 타당성평가 진술인지 검증 진술인지 구분 c) 주장에 해당되는 날짜 또는 기간을 포함한 해당 주장 d) 해당 진술 관련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유형 (즉, 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 e) 타당성평가/검증기관 명칭과 주소 포함(심벌(예: 인정심벌)이 포함된 경우 이는 호도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불명확해서는 안된다) f) 타당성평가/검증의 목적, 범위에 대한 설명 g)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정보가 가정값인지,	9.7.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ISO/IEC 17029:2019 9.7.2항을 따르도록 한다. 환경정보성명서에 가정, 전망 및/혹은 과거 이력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타당성평가 및 검증 의견서를 동일 문서에 작성할 수 있다. 의견서는 다음을 포함하도록 한다: - 환경 정보 관련 활동 파악 (예. 조직, 프로젝트 혹은 제품); - 책임당사자 파악; - 환경 정보 성명서는 책임 당사자의 책임임을 명시; - 환경 정보 성명서 작성을 위해 책임 당사자와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합의한 기준 파악; - 환경정보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을 위해 기관이 사용한 기준 파악 - 환경 정보 성명서에 미래 전망이 포함되어 있는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예측값인지 및/또는 이력값인지에 대한 설명 h)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및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 인용 i)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포함한(예: 중요성 또는 보증수준) 주장에 대해 도출된 의사결정 내용 j) 진술서 발행일과 고유 식별 수단 k)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경우,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모든 발견사항	경우, 예측의 근거가 되는 가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예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 의견서에는 기관의 책무를 제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 의견서는 조건부 적정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조건부 적정 의견의 사유가 정량적인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의견서는 중요한 왜곡과 그로 인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표시해줘야 한다. 부적정 (adverse) 의견서는 부적정 의견에 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의견서 발행을 거절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에 대해 소명 해야 한다.
9.8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9.8.1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가 발행 이후에 발견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이 사안을 고객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소유자와도 신속히 의사소통한다. b)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사안에 대해 고객과 논의 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수정이나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 9.8.2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수정의 사유를 명시함과 함께 새로운 진술을 발행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의 관련 단계가 재수행 될 수 있다. 9.8.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로 인해 최초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조정되었음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9.8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발견된 사실** ISO/IEC 17029:2019 9.8항을 따르도록 한다.
9.9 이의 처리 9.9.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 제기, 접수, 평가	**9.9 이의 처리** ISO/IEC 17029:2019 9.9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및 의사결정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9.9.2 이의 처리 프로세스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이의 제기 접수, 조사, 입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 b) 이의 조치 내용을 포함한 기록과 추적성 c)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장 9.9.3 이의제기를 접수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 9.9.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제기자에게 이의제기의 접수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진행 경과 보고도 제공하여야 한다. 9.9.5 이의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설명은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9.9.6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이의 처리 프로세스 과정의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9.9.7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와 의사결정은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9.9.8 이의제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당 이의제기 내용과 무관한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9.10 불만 처리 9.10.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불만 접수, 평가 및 해결에 대한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9.10.2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불만 접수, 입증, 조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프로세스; b) 불만 해결 조치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과 추적성; c)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을 보장. 9.10.3 불만을 접수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불만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9.10 불만 처리** ISO/IEC 17029:2019 9.10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다. 9.10.4 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접수 사실을 알리고,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진행 경과 보고도 제공하여야 한다. 9.10.5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설명은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한다. 9.10.6 불만을 접수한 기관은 불만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이 되면 접수된 불만을 해결하여야 한다. 9.10.7 불만에 대한 조사와 해결은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9.10.8 불만에 대한 해결은 해당 불만 내용과 무관한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가용한 자원이 없는 경우, 대안적 접근방법은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9.11 기록 9.1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a) 계약 이전에 제출된 정보 및 타당성평가/검증 범위 b) 타당성평가/검증 기간 결정의 정당성 c) 타당성평가/검증 계획활동의 모든 수정사항 d) 발견사항 및 중요한 또는 중요한지 않은 허위진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이 본 규격과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 e) 외주처리 활동 제공 기관의 평가, 선정 및 성과 모니터링 f) 결론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 g)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h) 불만 및 이의와 이후의 시정 또는 시정조치 9.11.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기록을 이송, 전송 및 전달 과정 등에서 안전하고 기밀이 준수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9.11 기록** ISO/IEC 17029:2019 9.11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9.1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평가/검증 기록을 프로그램, 계약, 법규 및 기타 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비고 ISO 15489-1은 기록의 생산, 획득 및 관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과 원칙을 규정한다.	
10. 정보요구사항	**10 정보요구사항**
10.1 공개정보 10.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디음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b) 공평성에 대한 의지 c)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용을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제공하는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목록 d) 불만 및 이의제기 절차	**10.1 공개정보** ISO/IEC 17029:2019의 제10.1항을 따르도록 한다. 공개 정보에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의견서 전체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부속서 B참고)
10.2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10.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의 활동과 운영부문에 대한 명확하고 추적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2 기타 이용 가능한 정보** 10.2.1 ISO/IEC 17029:2019 10.2항을 따르도록 한다.
10.2.2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10.2.2 ISO/IEC 17019:2019 10.2.2항의 경우, 타당성평가/검증 의견서의 상태가 의견서를 발행한 기관의 신원, 발행일 및 해당되는 경우, 개정일자를 확정함에 주의한다.
10.2.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a) 적용되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및 모든 변경사항 b)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비용 c) 다음과 관련된 고객에 대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요구사항 1)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준수 2)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을 위한 모든 필	10.2.3 ISO/IEC 17029:2019 10.2.3항의 요구사항 외에도, 타당성평가팀/검증심사팀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타당성 평가/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에는, 해당되고 가능한 경우, 이전 타당성 평가/검증 결과에 대한 기관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요 조치 준비 3)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예: 인정기구 평가사 또는 타당성평가사보/검증평가사보)를 대동하는데 대한 편의 제공 d) 10.3 의 요구사항에 따라 어떠 형태로든 타당성 평가/검증 결과를 인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기관의 방침	
10.3 타당성평가/검증의 인용 및 마크 사용 10.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에게 활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타당성평가/검증의 인용 또는 마크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타당성평가/검증기관 및 발행된 검증 진술에 대한 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0.3.2 이러한 인용 또는 마크는 타당성이 평가된/검증된 주장에만 활용되어야 하며, 제품이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10.3 타당성평가/검증의 인용 및 마크 사용** 10.3.1 ISO/IEC 17029:2019 10.3항을 따르도록 한다. 비고 제3자의 적합성 마크에 대한 정보는 ISO/IEC 17030에 명시되어 있다. 10.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고객이 사용 예정자를 호도하거나 기관의 명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환경 정보 성명서, 의견서, 보고서, 마크, 로고 또는 라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마크, 로고 및 라벨은 기관 혹은 프로그램과 관련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심볼을 포함할 수 있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타당성 평가나 검증을 받은 환경 정보 성명서 내 데이터 및 정보의 인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비고 타당성 평가/검증 의견서 및 보고서 인용과 마크 사용에 관한 추가 설명은 부속서 B에 명시되어 있다. 10.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고객이 의견서나 발견사실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전체를 온전히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10.4 기밀준수 10.4.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행 중에 습득하거나 생성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4.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일반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0.4.3 고객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나 타당성평가/검	**10.4 기밀준수** ISO/IEC 17029:2019 10.4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증기관과 고객 간의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다른 정보는 소유권이 있는 정보로 간주하고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10.4.4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법적요구에 따라 또는 계약에 의해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고객 또는 관련된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10.4.5 고객 이외의 출처로부터 습득한 고객에 대한 정보(예: 불만, 규제기관)는 고객과 타당성평가/검증기관 간의 기밀정보로 취급해야 한다. 이 정보의 제공자(출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제공자와 합의되지 않은 한 고객과 공유하여서는 안 된다.	
1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1.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11.1 일반사항 11.1.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실증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1.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방침과 책임 - 경영검토 (11.2) - 내부심사 (11.3) - 시정조치 (11.4) -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11.5) - 문서화된 정보 (11.6) 11.1.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ISO 9001 요구사항에 따라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11.1.2을 충족할 수 있다. 해당 품질경영시스템은 본 규격의 요구 사항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증해야 한다.	**11.1 일반사항** ISO/IEC 17029:2019 1.1항을 따르도록 한다.
11.2 경영검토 11.2.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진은, 본 규격의	**11.2 경영검토** ISO/IEC 17029:2019 11.2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충족과 관련된 방침 및 목표를 포함하여, 타당성평가/검증기관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분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시스템을 계획된 주기로 검토하여야 한다. 11.2.2 경영검토 입력 정보는 기록되어야 하며, 다음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타당성평가/검증기관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 변경사항 b) 목표의 충족 c) 방침 및 절차의 적절성 d) 이전 경영검토에 대한 조치 현황 e) 최근 내부심사 결과 f) 시정조치 g)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 h)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활동 범위 또는 업무의 분량이나 유형의 변화 I) 고객 및 인원의 피드백 j) 불만 및 이의제기 k) 모든 실행한 개선활동의 효과성 l) 자원의 적절성 m) 리스크 분석 결과 n) 기타 모니터링활동 및 교육훈련과 같은 관련 요인 11.2.3 경영검토의 출력물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 조치가 기록되어야 한다. a) 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효과성 b) 본 규격의 요건충족과 관련된 타당성평가/검증기관 활동의 개선 c) 필요 자원 제공 d) 변경 필요성	경영검토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 시행하도록 하되, 경영검토 간의 간격이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11.3 내부심사 11.3.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경영시스템과 관련	**11.3 내부심사** ISO/IEC 17029:2019 11.3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경영시스템이 다음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한다.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포함하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자체 요구사항 - 본 규격 요구사항 b) 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11.3.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실시하여야 한다. a)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관련 활동 중요성과, 타당성평가/검증기관에 영향을 주는 변경사항 및 이전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주기, 방법, 책임, 계획 요구사항 및 보고를 포함한 심사프로그램을 계획, 수립, 실행 및 유지 b) 개별 심사 별로 심사기준과 범위를 정의 c) 심사결과를 관련 인원에게 보고 d) 과도한 지연 없이 적절한 시정 및 시정조치 실행 e) 심사프로그램의 실행 근거 및 심사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비고 ISO 19011은 내부심사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 11.3.3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내부심사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심사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부심사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하되, 심사 간격이 15 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11.4 시정조치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기관 활동에 대한 부적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또한 필요한 경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조치는 직면한 문제점의 영향에 비례하도록 적절하여야 한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a) 부적합 파악(예: 유효한 불만 또는 내부심사로부터 파악) b) 부적합의 원인 결정 c) 부적합의 시정	**11.4 시정조치** ISO/IEC 17029:2019 11.4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d) 부적합의 재발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 e) 시기 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 f) 취해진 조치 결과 기록 g) 시정조치 효과성 검토	
11.5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11.5.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타당성평가/검증 활동과 연계된 리스크 및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a) 경영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음을 보증 b)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의 프로그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 향상 c)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과 잠재적인 실패 예방 및 저감 d) 개선 달성 11.5.2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을 계획해야 한다. a)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b) 해당 조치를 경영검토에 통합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법 c) 해당 조치의 효과성 파악 방법 비고 본 규격에서는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리스크를 다루는 조치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식적인 방법이나 문서화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다.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본 규격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좀더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방법론(예: 타 지침이나 표준의 활용)을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5.3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는 타당성평가/검증 결과의 잠재적인 영향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한다. 비고 1 리스크 관련 조치로는 위협 식별 및 회피, 기회 추구를 위한 리스크 감내, 리스크 원인 제거, 발생가능성 및 중요성 조정, 리스크 분배,	**11.5 리스크 및 기회 관련 조치** ISO/IEC 17029:2019 11.5항을 따르도록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통한 리스크 유지 등이 있을 수 있다.	
11.6 문서화된 정보 11.6.1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시스템과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a) 필요한 장소와 시점에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적합한 장소에 비치 b) 적절한 보호 (예: 기밀성 훼손,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 훼손으로부터 보호) 11.6.2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를 위해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활동을 실행하여야 한다. a)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 b) 가독성 보존을 포함한 보관 및 보존 c) 변경 관리(예: 버전 관리); d) 보존 및 폐기 11.6.3 경영시스템의 기획과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타당성평가/검증기관이 결정한, 외부 출처의 문서화된 정보는 적절히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6.4 적합성의 증거로 보존되는 문서화된 정보는 의도하지 않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비고 1 접근은 문서화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거나 또는 문서화된 정보를 열람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수 있다. 비고 2 문서화된 정보는 본 규격에 따라 요구되는 프로세스, 절차, 기록, 데이터, 명세서 및 기타 정보를 말한다.	**11.6 문서화된 정보** ISO/IEC 17029:2019 11.6항을 따르도록 한다.
부속서A (참고)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부속서 A(참고)** **의견서 유형**
A.1 프로그램 소유자는 본 규격의 최소 요구사항 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포함할 세부 수준을 규정할 책임이 있다.	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 기관은 표 A.1의 열에 명시된 의견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A.2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

a)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이 되는 주장의 유형과 평가 요구사항

b) 타당성평가/검증 팀 및 기관의 인원에 대한 적격성 기준 (7.2, 7.3)

c)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9.1) 을 수행할 때 취해야 할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

d) 중요성 (9.2.2)및 필요한 경우 보증수준

e) 타당성평가/검증(9.5.4)의 증거수집활동

f) 보고 요구사항 (9.5.5);

g) 프로그램 요구사항(9.6)에 따라 모든 활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등의 검토활동

h) 타당성평가/검증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과 이 결과의 중요성- 이는 어떠한 발견사항이 나오면 타당성 평가/검증 진술(9.7.2)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I) 특정 분야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 평가/검증 진술에 사용되는 문구

j) 타당성평가/검증 기관이 타당성 평가/검증(9.11.3)을 수행한 증거로 유지해야 할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

k) 수행한 타당성평가/검증과 일관되도록, 주장(9.5)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발행된 타당성 평가/검증 진술(9.7)

A.3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소유자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a) 공평성 모니터링 기능의 필요성 (5.3.3, 비고 2)

b) 이전 활동과 관련하여 타당성평가/검증 대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인원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 (7.2.5)

c)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7.3.2)

비고 혼합 계약 (ISO 14064-3:2019, 부속서 D 참조)의 경우, 기관은 하나 이상의 의견서를 발행하거나 의견서(들) 및 발견사실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표 A.1는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의견서 유형을 명시하는 서로 다른 용어를 보여준다

표 A.1 —타당성 평가/검증 의견서의 서로 다른 명칭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 D	프로그램 E
Unmodified (적정 의견)	Unqualified (적정 의견)	Positive (긍정 의견)	Satisfactory (만족 의견)	Positive (긍정 의견)
Modified (조건부 적정 의견)	Qualified (조건부 적정 의견)	Qualified positive (조건부 긍정 의견)	Satisfactory with comments (조건부 만족 의견)	
Adverse (부적정 의견)	Adverse (부적정 의견)	Adverse (부적정 의견)	Unsatisfactory (불만족 의견)	Negative (부정 의견)
비고 출처: ISO 14064-3:2019, 제9.2항 표1.				

비고 2 본 문맥에서 “부정 의견 (negative)”이라는 단어는 의견서의 제한적 보증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고 3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관은 의견서 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

표 A.2는 왜곡의 유형 및 범위와 의견서의 유형 사이의 가능한 관계의 예시를 보여준다.

표 A.2 — 왜곡 및 의견서 유형

왜곡 유형	왜곡 정도	의견서 유형
왜곡이 없음	없음	적정의견 (unmodified)
왜곡이 중요한 수준은 아님	전반적이지 않음	적정/조건부 적정의견 (unmodified/modified)

d) 인원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사항 (7.3.2)

e) 인원, 설비, 장비, 시스템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7.1)

f) 타당성 평가기관/검증기관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외주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 조건 (7.4)

g) 샘플링, 중요성 기준, 품질 변수, 일정, 비용 등 계약 이전의 단계에 대한 추가 요소 (9.2)

h) 타당성평가/검증 협약에 대한 요구사항 (9.3)

I) 기관이 실질적인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착수하기 이전에 수행해야 할 계획 및 준비 활동 (9.4.)

j)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이후에 타당성평가/검증 결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9.6.3)

k) 특정 기밀준수 요구사항 (7.2.6)

l) 타당성평가/검증 기관이나 그 고객이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당성평가/검증을 인용하는데 대한 규칙

m)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일부로 고려한 입력정보 수용에 대한 책임을 통제하는 규칙(예: 계약 전에 작성되었거나 고객이 제공한 적합성 평가 결과)

부속서 B (참고)
ISO/IEC 17029에 정의된 용어 및 개념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 및 개념은 ISO/IEC 17000에서 정의한 적합성 평가의 일반적인 용어 및 개념에 해당한다. 표 B.1 참조

표 B.1 —ISO/IEC 17000에서 정의한 일반 용어 및 개념과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 및 개념 간의 관계

ISO/IEC 17000에서 정의한 일반 용어 및 개념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 및 개념
적합성 평가 대상	주장

왜곡이 중요한 수준임	전반적이지 않음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
	전반적	부적정 의견 (Adverse)
왜곡이 있긴 하나, 그 유형을 알 수 없음.	전반적이지 않음	조건부 적정 의견 (modified)
	전반적	의견 발행 거절

비고 1 왜곡이 중요 수준에 해당하지 않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요구사항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를 개정할 수 있다.

비고 2 개별적이든 총체적이든 다음은 전반적 왜곡에 해당한다:

- 환경 정보 성명서의 특정 요소, 범주 혹은 항목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 국한된다 하더라도, 환경 정보 성명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사용 예정자의 이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경우.

부속서 B (참고)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 인용 및 마크의 사용

B.1 일반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시, 타당성 평가/검증 기관이 작성한 발견사항, 결론, 보고서 및 의견서를 책임 당사자가 인용하기도 한다. 검증 혹은 타당성 평가 기관은 책임당사자의 타당성 평가/검증 인용 및 마크 사용에 대한 규칙을 수립해야 할 책임 (제10.3항 참고)이 있다.

B.2 타당성 평가/검증 성명서 인용

B.2.1 일반

본 규칙에서, 기관은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단문형”과 “장문형” 인용을 구분해야 한다. 기관은 단문형 인용이 장문형 인용을 포함하거나 언급하도록 해야 한다.

비고 “포함”한다는 것은 같은 매체 안에 장문형 인용이 단문형 인용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언급한다”는 것은 단문형 인용 근처에 다른 매체(예. 웹사이트)에서 인용된 장문형의 위치를 언급해야 한다는 의미한다.

ISO/IEC 17000에서 정의한 일반 용어 및 개념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 및 개념
적합성 평가 기관	타당성평가 기관/검증 기관
적합성 평가 스킴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타당성평가 프로그램/검증 프로그램
적합성 표명	타당성평가 진술/검증 진술
적합성 평가 활동의 선정 기능	계약전, 계약 및 계획 활동
적합성 평가 활동의 결정 기능	증거 수집 활동을 포함한 타당성평가/검증 실행 활동
적합성 평가 활동의 검토 기능	검토
적합성 평가 활동의 의사결정 기능	의사결정
적합성 평가 활동의 증명 기능	타당성평가/검증 진술 발행
적합성 평가 활동의 사후관리 기능	해당사항 없음

그림 B.1 은 ISO/IEC 17000에 기술된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능적 접근 방식을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와 개념에 맞게 조정하여 도식화하고 있다.

표 B.1는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허용 가능한 인용의 예시를 보여준다.

표 B.1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허용 가능한 인용

주제	단문형	장문형
과거 이력 정보a	“합당한 보증 수준에서 검증됨”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기관명] b 은 우리 성명서의 데이터 및 정보가 합당한 보증 수준으로 타당하게 기술되었다고 결론 내림”
과거 이력 정보a	“제한적 보증 수준에서 검증됨”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기관명] b 은 우리 성명서의 데이터와 정보가 타당하게 기술되지 못했음 보여주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
전망 혹은 예측	“타당성 평가됨”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기관명] b 은 성명서에 언급된 가정, 방법 및 제약사항이 우리의 전망 혹은 예측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기술함”

a 검증을 위해 제출된 과거 이력 데이터 및 정보는 모니터링, 추정 혹은 모델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 책임 당사자가 성명서를 “검증됨”으로 지칭하는 경우, 검증을 암시하는 모든 인용 (예. “검증됨”, “제3자 검증됨” 혹은 “[기관명]에 의해 검증됨”과 같은 용어 사용)에는 장문형 인용을 적용한다.

B.2.2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품 성명서에 대한 검증 인용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명서의 경우, 검증 기관은 검증과 AUP의 혼합 계약 인용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표 B.2는 인용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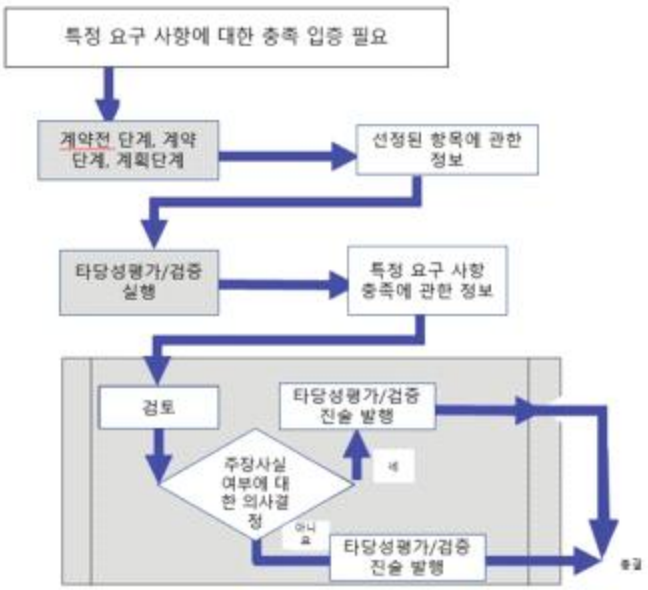 그림 B.1 본 규격에서 정의한 용어와 개념에 맞게 조정된 기능적 접근 방식 비고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타당성평가/검증 진술서가 발행되거나 발행되지 않는다.	표 B.2 —제품 전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명서에 대한 검증 및 합의된 절차 (AUP) 인용 인용 유형 / 단문형 / 장문형 기능 혹은 선언 단위 (혼합 계약) / "확인됨" / "[기관명] a가 성명서의 상류 및 핵심 데이터와 정보를 검증하였고, AUP를 통해 하류 데이터 및 정보를 테스트하였지만, 우리 성명서가 타당하게 기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음." [기관명] a의 검증 의견서 및 발견사실 보고서는 20xx년 xx월xx일에 발행되었음. a 책임당사자가 주제를 "검증됨"으로 지칭하는 경우, 검증을 암시하는 모든 인용 (예. "검증심사원", "제3자 검증심사원" 혹은 "[기관명]"과 같은 용어 사용)에는 장문형 인용을 적용한다.
부속서 C (참고) **타당성평가/검증 적용 도식화** 그림 C.1 은 타당성평가의 적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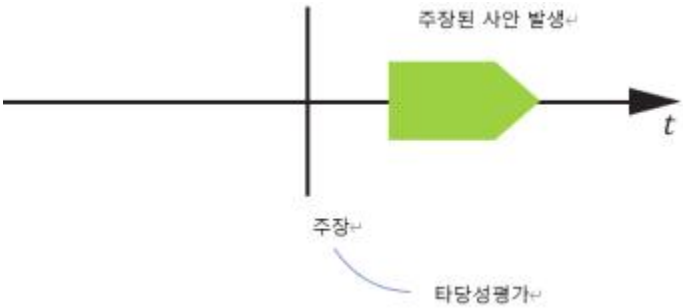 그림 C.1 — 타당성평가 비고 타당성평가 기관은 미래에 사용이 의도된 정보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B.3 마크 사용** 마크 사용에 관한 규칙에는 책임 당사자가 타당성평가 혹은 검증 대상이 아닌 성명서 임에도 타당성평가나 검증을 받았음을 암시하기 위해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 마크는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된 환경정보 설명 옆, 책임 당사자의 환경정보 보고서에 붙일 수 있다.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담긴 환경 정보 성명서에 기관의 마크를 사용해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그림 C.2 은 검증의 적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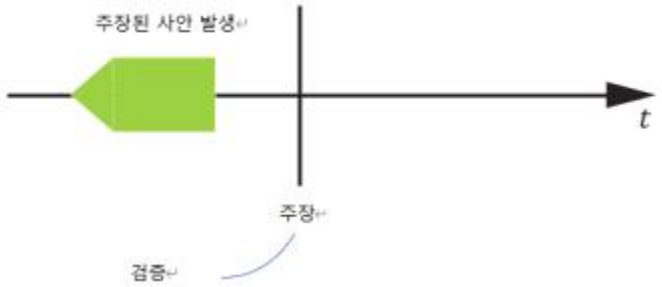 그림 C.2 — 검증 비고 검증기관은 역사적 정보에 관한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함으로써 보증을 제공한다.	서는 안 된다. 표 B.3는 마크 사용이 허용되는 예시와 허용되지 않는 예시를 보여준다. 표 B.3 — 마크 사용 허용 및 불허의 예시 **마크 사용 허용의 예시** [기관명 마크] "우리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인벤토리는 [기관명]에 의해 검증되었다." "20xx년 xx월 xx일 일자의 의견서에서, [기관명]은 [합당한 보증수준으로] 데이터 및 정보가 우리 성명서 상에 타당하게 기재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마크 사용 불허의 예시** [기관명 마크] "[책임당사자 명칭]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고, 과학기반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파리 협정의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온실가스 데이터 및 정보 인벤토리가 입증해주고 있다" **부속서 C (참고)** **발견사실 보고서의 예시** **C.1 일반** 본 부속서에서는 합의된 절차 (AUP) 계약의 결과로서 발행하는 발견사실 보고서의 예시를 보여주고 자한다. 해당 계약 유형에서는 의견서를 발행 (및 이로서 보증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UP 계약의 결과로 발견사실 보고서를 발행한다. 발견사실 보고서는 절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위, 절차 수행 시 활용된 기준 (예: ISO 14064-3:2019 부속서 C) 및 합의된 검증 활동과 관련된 목적 및 제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발견사실 보고서에는 절차에 합의한 사용예정자(들)만이 해당 보고서를 활용해야 함을 명시한 문구도 들어있어야 한다. 검증기관은 합의된 절차 (AUP)를 적용함으로써 도출된 모든 발견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검증기관은 발견사실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증거 수

<table>
<tr><th>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th><th>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th></tr>
<tr><td></td><td>
집 절차나 환경 정보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을 수행했다면, 보고해야 하는 추가 발견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본 계약 유형을 활용하는 검증심사원은 표 C.1에 명시된 요소들이 각각의 발견사실 보고서에 들어 있도록 해야 한다.
표 C.1 —합의된 절차 보고서 내용의 예시
<table>
<tr><td>제목</td><td>“공평”이란 단어가 들어간 제목
수신인 (보통 사용예정자(들))</td></tr>
<tr><td>내용 및 역할</td><td>책임당사자 파악
대상 파악
대상은 책임당사자의 책임이라는 문구
절차의 충분성 여부는 오롯이 사용예정자의 책임이라는 문구
이러한 절차의 충분성에 대한 기관의 책임 부인</td></tr>
<tr><td>방법론</td><td>수행된 절차는 책임당사자와 타당성평가/검증기관 간에 합의된 것이라는 문구
합의된 절차 (AUP)가 [기준/프로그램 삽입]에 따라 수행됐다는 문구
발견사실 보고서는 절차에 합의한 사용 예정자(들)만 활용해야 한다는 문구</td></tr>
<tr><td>절차 및 결과</td><td>합의된 절차 (AUP)를 수행한 목적 파악
수행된 특정 절차의 나열
해당되는 경우, 합의한 중요성에 대한 제약 명시
발견된 오류 및 예외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세 설명 등 기관의 발견사실 기술</td></tr>
<tr><td>방법론에 대한 단서조항</td><td>해당되는 경우, 절차 혹은 발견사항에 대한 의구심 및 제약사항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가 제공한 지원의 성격을 기술</td></tr>
<tr><td>합의된 절차 (AUP) 보고서에 대한 단서조항</td><td>수행된 활동이 의견서 발행 및 보증 제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타입의 검증활동이라는 문구
타당성 평가든 검증이든 추가 활동이</td></tr>
</table>
</td></tr>
</table>

	있었다면, 보고해야 하는 다른 사항을 발견했을 수 있다는 문구 발견사실 보고서는 사용예정자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
기관	보고서 일자 기관 주소 기관 서명

C.2 오존 파괴 물질을 제거하는 회사를 위한 발견 사실 보고서 예시

본 예시의 사용 예정자는 오존파괴물질 (ODS) 제거 시설에 관해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승인한 시설관리 지침(Code of Good Housekeeping)에 기술된 운영 변수에 따른 성과 보고서를 요청한 회사이다.

발견 사실에 관한 공평 보고서
국가 A의 [제거 회사 (이하 “DC”)] 경영진 및 국가 A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하 “기후부”) 귀하 합의된 절차 우리는 오존파괴물질 제거에 관하여 DC와 국가A의 규제당국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의한 증거 수집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10월 21일 까지의 기간동안 오존파괴물질 제거 시설에 대해 몬트리올 의정서 (2006년 제7판)의 기술경제평가패널 (Technology and Economic Assessment Panel)이 승인한 시설관리규약 (Code of Good Housekeeping)에 명시된 운영 변수를 열거하였다. 우리는 “ISO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지침 및 규격 (ISO 14064-3:2019)”을 기준으로 계약을 수행하였다. 해당 절차의 충분성은 본 보고서에 명시된 사용 예정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우리는 본 보고서를 요청한 목적이든 그 외의 목적이든지 아래 명시한 절차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들은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10월31일 까지 시설관리규약 (Code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of Good Housekeeping)의 적용 결과를 평가하는 DC의 ODS 제거 부서를 지원할 목적으로만 실행되었다. 우리는 규정된 기준에 명시된 운영 변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DC 성명서에 대한 의견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계약은 체결하지도 않았고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의견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추가 절차를 실행했다면, 보고해야 했을 추가 사항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 DC는 이러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연방환경규제당국인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DC에 제공된 전달사항을 확보함으로써, 대기 및 물 규제가 DC의 시설에 적용가능한 지 확인하였다. 2.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공급자와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확보하여 확인하고, 포장 및 선적 지시사항을 DC의 ODS 매입 절차서 (표준작업절차서 12345) 및 구매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12345-002) 4페이지 (DC는 “ODS 공급자에게 포장 및 선적 지시사항을 제공한다”)에 명시된 포장 및 밀봉 요구사항과 비교한다. 3. 2017년 8월에서 10월 기간 동안의 주간 탱크 검출 테스트를 확보하여 확인하고, 테스트 절차와 DC의 “파괴물질 회수절차 (Recovery Procedures for Destruction Material)” (표준작업절차서 56789) 페이지 7와 비교한다. 4. “제품도착 시 인수절차”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56789-001) 페이지5 (실린더 도착 시 누수 점검)와의 부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ODS 실린더 주간인수기록을 확보하여 확인하였다. 5. 실린더 무게 측정 절차가 DC의 ODS 실린더 무게측정 절차 (표준작업절차서 12456)와 부합하는 지 관찰하기 위해, DC의 ODS 저장실에 방문하였다. 6. 꽉 찬 ODS 실린더와 비어 있는 ODS 실린더의 무게 기록 12개를 확보하였고, 각각의 실린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더 마다 꽉 찬 실린더 무게에서 빈 실린더의 무게를 뺀 값이 5kg 보다 큰 지 확인해 보았다. 7. DC의 ODS 샘플링 및 분석 품질 관리 절차를 확보하여 이를 “급수탱크 샘플링” 표준작업절차서 34567, 페이지8과 비교하였다. 8. DC 아르곤 아크 플라즈마 파괴 기술의 파괴효율에 관한 국가 A의 대기준수연구소 보고서를 획득하여, 이를 연도가스 내 오염원의 농도 및 연도가스 유속을 0°C 및 101.3 kPa의 정상 조건 하에서의 건조한 기체 상태로 표현하고 연도가스를 11 % O2로 교정한 상태에서 99.99%의 최소 허용 파괴효율과 비교하였다. 다음은 발견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다. a. 항목 1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1번)으로부터 받은 2016년1월14일자 전달사항에는 DC 시설에 적용되는 공기 배출 또는 방류 규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b. 항목 2의 경우, 모든 (5개) 기록에서 DC의 ODS 매입 절차 (표준작업절차서 12345)와 구매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12345-002)에 부합하는 포장 및 선적 지시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 2017년 8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의 탱크 검출 검사가 DC의 “파괴물질 회수절차” (표준작업절차서 56789) 페이지 7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d. ODS 실린더 주간인수기록이 “제품도착 시 인수 절차”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 65789-001) 페이지 5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e. 관찰된 무게 측정 절차가 DC의 ODS 실린더 무게 측정 절차 (표준작업절차서 12456)에 부합하였다. f. 12개의 기록에서의 무게 차는5 kg 이상이었다. g. DC의 품질관리 절차는 “급수탱크 샘플링” 표준작업절차서 34567 페이지8에 부합하였다. h. 보고된 파괴 효율이 최소 요구사항을 초과하였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ISO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 지침 및 규격" (ISO 14064-3:2019)에 의거하여, 상기의 절차는 타당성 평가 또는 검증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용된 기준에 대한 부합성 여부를 다룬 DC가 제출한 성명서 (2019년 1월 25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추가로 증거수집 절차를 수행했거나, 온실가스 완화 프로토콜에 따라 제거된 오존파괴물질로부터 이뤄진 배출 감축에 대한 검증을 실행했다면, 보고했어야 하는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해당 보고서는 DC의 ODS 제거부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9년 3월12일 MNO 검증심사원
	C.3 녹색 채권 발행자를 위한 발견사실 보고서 예시 본 예시에서 다룰 합의된 절차 (AUP)의 주제는 녹색 채권 발행자의 사전 발행 계획에 관한 것이다. **발견사실에 관한 공평 보고서** 국가 B의 재무부 (이하 "재무부") 경영진 및 국가 B의 ABC 은행 (이하 "ABC 은행") 귀하. 합의된 절차 우리는 국가 B, 도시 Z의 하수처리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장래 녹색 채권 발행에 관하여 재무부와 ABC 은행이 합의한 증거수집 절차를 수행하였다. 우리는 14065:- 와 ISO 14030- 3:-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계약을 수행하였다. 해당 절차의 충분성은 본 보고서에 명시된 사용예정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따라서, 우리는 본 보고서를 요청한 목적이든 그 외의 목적이든 아래 명시한 절차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들은 국가 B, 도시 Z의 하수 처리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계획된 녹색 채권 발행에 ISO 14030-1: 및 ISO 14030-3: 을 적용한 결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과를 평가 하는 재무부와 ABC 병원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실행되었다. 우리는 재무부의 도시 Z 2019 수자원 기반시설 채무를 ISO 14030-1: 및 ISO 14030-3: 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녹색채권으로 지정하는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 계약은 체결하지도 않았고 수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의견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추가 절차를 시행했다면, 보고해야 했을 추가 사항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진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격 평가 프로세스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문서를 확보하여 확인하였다. 2. 해당 프로세스가 ISO 14030-1의 요구사항을 부합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문서를 확보하여 확인하였다. 3. 채권의 계획된 순익금에 대한 추가분을 확보하여 확인하였고, 총액을 발행자의 채무 혹은 지정 프로젝트 및 자산의 공정 시장가격과 (둘 중 낮은 금액) 비교하였다. 4. 재무부의 계획 부채조달로 자금을 마련키로 한 도시 Z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젝트 유형을 검토하고, 해당 유형을 ISO 14030-3의 적격한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젝트 유형 분류 체계와 비교하였다. 5. 유입과 지출 사이에 연속적인 감사 종적의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 수익금 추적 기록을 확보하였다. 6. 아직 구매하지 않은 자산 기록을 확보하여 확인하였고, 예정 원가를 지정 계정에 들어있는 비할당 자금의 금액과 비교하였다. 다음은 발견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a. 2019년 2월 15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문서는 자격 평가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있다. b. 2019년 2월 15일자 최종 사전발행 채권 공시 문서는 ISO 14030-1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였다. c. 지정 프로젝트 및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이 채권의 계획된 순익금을 초과하였다. d. 도시Z에 기획된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젝트 유형은 ISO 14030-3의 적격한 프로젝트 유형 분류 체계에 수록된 유형 중 하나와 부합하였다. e. 유입에서 수익금 지불에 이르는 연속적 감사 종적이 확인되었다. f. 지정 계정에 들어있는 자금의 액수가 아직 구매하지 않은 자산의 예정원가 보다 3퍼센트 더 높았다. ISO 14065 “환경 정보 타당성 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요구사항” 및 “녹색융자도구 - 제4부: 검증 요구사항” (ISO 14030-4)에 의거하여, 상기의 절차는 검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된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다룬 국가 B의 재무부 및 국가 B의 ABC 은행이 제출한 성명서 (2019년 2월 15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추가로 증거 수집 절차를 수행했거나 도시 Z의 수자원 기반시설개선을 위한 재무부의 지정 녹색 채권 적합성에 대한 보증 계약을 실행했다면, 보고했어야 하는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본 보고서는 국가 B의 재무부와 국가 B의 ABC 은행만을 위한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9년 3월 12일 MNO 검증심사원 **부속서 D (규정)** **녹색채권 타당성 평가, 검증 및 합의된 절차(AUP)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D.1 일반 본 부속서는 녹색 채권(green bond) 혹은 녹색 대출(green loan)과 연관이 있는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검증 혹은 합의된 절차 (AUP)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적격성 및 프로세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D.2 인원에 대한 적격성** 기관은 타당성 평가팀 혹은 검증심사팀 구성 시, 본 문서 및 ISO 14030-4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D.3 프로세스 요구사항** ISO 14030-1 혹은 ISO 14030-2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주장하는 성명서에 대해 제9항의 프로세스 요구사항 이행 시, 기관은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 (engagement)을 수행할 수 있다: a) ISO 14030-4 및 (필수 개정이 이뤄진 경우) ISO 14064-3의 요구사항 혹은 b) ISAE 3000 및 (해당 시) ISRS 4400의 요구사항 **부속서 E (규정)**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검증 및 합의된 절차 (AUP)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E.1 일반** 본 부속서는 온실 가스와 연관이 있는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 혹은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적격성 및 프로세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E.2 적격성** **E.2.1 일반** 7항과 ISO 14066의 요구사항 외에도, E.2.2과 E.2.3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E.2.2 인원에 대한 적격성 타당성평가 혹은 검증 기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타당성 평가자 및 검증심사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술전문가는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기타 온실가스 프로그램 관련 조항 및 해당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해당 정보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b) 교육/훈련 니즈를 파악하여, 필요 시,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프로세스, 요구사항, 방법론, 활동 및 기타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E.2.3 팀 배치** **E.2.3.1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지식**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비롯하여, 해당 온실가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a) 자격 (eligibility) 요구사항; b) 서로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이행 (해당되는 경우); c)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요구사항 및 지침. **E.2.3.2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 기술전문성**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a) 온실가스 프로젝트, 조직 혹은 제품의 특정 온실가스 활동 및 기술; b) 온실가스 배출원 (sources), 흡수원 (sinks) 혹은 저장소 (reservoirs)의 파악 및 선택; c) 관련 기술 및 분야 이슈를 비롯한 수량화, 모니터링 및 보고; d) 일반적 및 특이한 운영상태 등 온실가스 성명서의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온실가스 성명서와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비롯하여, 온실 가스 프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로젝트, 조직 혹은 제품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운영, 계약 또는 기타 합의 상의 여파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E.2.3.3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의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 7.3.7항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타당성 평가팀/검증심사팀은 다음의 역량을 비롯하여, 온실가스 프로젝트, 조직 혹은 제품의 온실가스 성명서를 평가하는 데이터 및 정보 심사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a)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성명서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에 프로젝트 지지자 혹은 조직이 효과적으로 파악, 모집, 분석 및 보고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온실가스 프로그램 혹은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했는 여부를 결정하는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을 평가한다; b) 온실가스 성명서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흐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E.2.3.4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팀에 대한 적격성** E.2.3.1, E.2.3.2 및 E.2.3.3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타당성 평가팀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세스, 절차 및 방법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a) 기본 가정을 비롯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선택, 정당화 및 수량화; b)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보수성 결정; c)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경계 규정; d)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활동, 제품 혹은 서비스의 유형 및 수준과 온실가스 프로젝트 사이의 등가성 입증; e) 온실가스 프로젝트 활동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활동에 추가로 이뤄진 것인지 입증; f) 2차 효과 (탈루) 및 침투와 같은 온실가스 프로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그램 요구사항의 적합성 입증 (적절한 경우). 비고 ISO 14064-2에는 보수성 원칙과 등가성 개념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이 수록되어 있다. E.2.3.1, E.2.3.2 및 E.2.3.3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타당성 평가팀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분야 경향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2.3.5 특정 온실가스 프로젝트 검증팀에 대한 적격성** E.2.3.1, E.2.3.2 및 E.2.3.3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에도, 프로젝트 검증팀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세스, 절차 혹은 방법론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a) 타당성이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 및 온실가스 프로젝트 이행 사이의 일치성 평가; b)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및 기본 가정을 비롯하여, 타당성이 평가된 온실가스 프로젝트 계획이 현재도 적절한 지 확인. **E.2.3.6 특정 온실가스 제품 검증심사팀에 대한 적격성** E.2.3.1, E.2.3.2 및 E.2.3.3의 요구사항 외에도, 제품 검증심사팀은 다음에 대한 적격성을 보유해야 한다: -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 - 특정 검증에 적용되는 제품 카테고리 규정 (PCR) 혹은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제품 카테고리 규정 (CFP-PCR); - 특정 검증에 적용되는 데이터 베이스 구조. **E.3 프로세스 요구사항** **E.3.1 일반** 온실가스 의견서에 대해 제9항에 명시된 프로세스 요구사항 이행 시, 기관은 ISO 14064-3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약 (engagement)를 수행해야 한다. **E.3.2 제품 탄소발자국 (CFP) 시스템 접근법에 대한 특정 요건** 제품탄소발자국 (CFP) 시스템 접근법 (ISO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ISO 14065:2020 온실가스 - 환경 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에 관한 일반 원칙 및 요구사항
	14067:2018 부속서 C 참고)에 의거하여 수립된 CFP 검증 시, 검증기관은 CFP 시스템이 현재도 효과적인 지 확인해야 한다. **E.4 외주** 온실가스 프로그램이 외주를 금지하지 않는 한, 타당성 평가 혹은 검증 기관은 외주를 줄 수 있지만 (7.4항 참고), 외주 기관에게 본 문서 및 ISO 14064-3의 요구사항을 부합하는 지 입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속서 F (규정)**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재무 활동 보고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검증 및 합의된 절차 (AUP)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F.1 일반** 본 부속서는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재무 활동 보고와 연관된 환경 정보 성명서에 대해 타당성 평가, 검증 혹은 합의된 절차 (AUP)를 수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적격성 및 프로세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F.2 인원에 대한 적격성** 검증심사팀 혹은 타당성 평가팀 구성 시, 기관은 본 문서 및 ISO 14097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F.3 프로세스 요구사항** ISO 14097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주장하는 성명서에 대해 9항의 프로세스 요구사항 이행 시, 기관은 다음에 의거하여 업무(engagement)를 수행할 수 있다. a) ISO 14097:2021 13항 및 (필수 개정이 있는 경우) ISO 14064-3의 요구사항 또는 b) ISAE 3000 및 (해당 시) ISRS 4400의 요구사항